

신용장의 개설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이 방 식* · 박 석 재**

-
- I. 서 론
 - II. 신용장의 개설
 - III. 신용장의 재개설
 - IV.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
 - V. 결 론
-

주제어 :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의 개설, 재개설

I. 서 론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최근들어 그 이용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¹⁾ 아직도 상대방을 신용할 없는 거래의 경우에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1)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설은행 및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의 서류 제시의 일치성에 관하여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용장의 이용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J. F. Dolan, "The strict compliance rule in a recession", *DCInsight*, Vol.15,

는 신용장²⁾이 종종 이용되고 있다.³⁾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수출상에게로의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용장이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두 가지 형태로 개설되었지만, 2007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⁴⁾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고 취소불능 신용장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로 개설은행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무계에서는 신용장의 개설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신용장의 재개설,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소홀하여 왔던 신용장의 개설 지연, 재개설 및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 주제들에 관해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銀行法務²¹⁾이라는 저널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연구방법으로서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일본의 銀行法務²¹⁾이라는 저널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최신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연구범위로는 신용장의 개설 지연, 신용장의 재개설,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No.4, ICC, 2009. 10/12, p.8.). 최근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수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용장이 수량 및 금액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ICC, "New directions for the ICC Banking Commission", *DCInsight*, Vol.15, No.3, ICC, 2009. 7/9, p.10.).

- 2) 신용장은 아마도 서로를 신뢰하는 두 무역 파트너 사이의 지급 메커니즘이다(N.D. George, "The irrevocable credit and UCP 600 article 32", *DCInsight*, Vol.13, No.1, ICC, 2007. 1/3, p.8.).
- 3) 최근 세계경제가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용장 시장에 신뢰가 천천히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다(M. Ford, "A new order in the L/C market?", *DCInsight*, Vol.16, No.1, ICC, 2010. 1/3, p.1.).
- 4)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 600이라 함).

본 연구를 통하여 신용장 개설 관련 제 문제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계 및 은행업계의 관계자들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신용장의 개설

1.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 의무와 관련한 실무상의 유의점

국제매매계약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은 결제조건을 송금방식, 추심방식 또는 신용장방식 등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⁵⁾ 수입상이 수출상과의 매매계약 중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의 결제방법을 결정한 경우, 또는 동종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종래 늘 신용장을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신용장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수입상이 어떠한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통상은 매매계약 중에서 약정되고 있으며, 수입상은 그 결정에 따른 신용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히 대금결제를 신용장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지만을 결정하고, 그것이 취소가능인가 취소불능인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신용장을 이용하는 목적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근거로 하여⁶⁾ 수입상으로부터 대금회수에 관한 불안 없이 선적을 이행하고, 대금을 쉽게 받기 위함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입상은 이들 신용장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취소불능 신용장⁷⁾을 제공

5) W. Baker & J.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p.43.

6) 지급의 확실성은 신용장에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급의 확실성이 신용장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C.S. T. Song,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15, No.3, ICC, 2009. 7/9, p.12.).

7) 일부 개설은행들은 그들 고객의 요청으로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나 또는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되지 않은 신용장을 취소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취소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하여야 한다.⁸⁾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한 규정⁹⁾이 삭제되어,¹⁰⁾ 신용장이 취소불능한¹¹⁾ 개설은행의 확약이라고 정의되며, 또한 신용장에는 그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취소불능이라고 해석되며,¹²⁾ 더욱이 UCP 500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¹³⁾을 감안한다면 취소불능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¹⁴⁾

여기에서 수입상이 신용장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¹⁵⁾의 停止條件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신용

신용장의 취소불능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M. Burjaq, "UCP600 one year on", *DCl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p.6.).

- 8)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는 국내법에서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취소가능/불능 여부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신용장통일규칙보다 현지 법률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취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신용장을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 소재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받았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30).
- 9) 1993년 개정판 신용장통일규칙(일명 UCP 500이라 호칭됨) 제6조 및 제8조는 취소가능 신용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 10) 국제산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UCP 600에서 취소가능 신용장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A.T.M. N. Hoque, "The irrevocable credit and the presenter's rights", *DCl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p.14.).
- 11) UCP 500에서는 신용장은 취소가능 혹은 취소불능하다고 정의 내렸으나, UCP 600에서는 신용장을 취소불능한 약정이라고 정의 내림으로써 취소가능 신용장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즉, 신용장은 취소불능 신용장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편, 전제서, p.23).
- 12) 平野英則, "UCP600第10條項新設の背景および實務上の留意点", 『金融法務事情』, No.1831, 2008. 4, p.5.
- 13)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UCP 69. ; 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23.
- 14) 이 점에 관하여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 약함)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매계약상의 신용장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높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CC §2-325(3)).

장에 의한 대금의 결제가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우선 수입상이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상은 이것에 앞서서 화물을 선적할 의무는 없으며, 수입상이 제공한 신용장을 입수하기 전에는 화물을 선적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다.¹⁶⁾

수입상이 신용장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있기 까지 수출상이 화물의 선적을 거절 가능한 것은 물론이지만, 신용장의 제공은 매매의 중요조건이며, 매매계약에서 특약된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의무위반이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그것에 기초하는 해제에 따라 수출상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⁷⁾

2.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 시기와 관련한 실무상의 유의점

수입상은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서 내에 대금의 결제방법으로 신용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약속된 기일까지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수입상이 수출상에 대하여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는 매매계약내용 중에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다. 신용장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수출상과 수입상은 흔히 특정한 기일이나 기간을 정하여 신용장 개설시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최소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 내에 마련하여 둔다.¹⁸⁾

이것에 대하여 매매계약 내용 중에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경우는 수입상은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UCC는 “매수인이 합의된 내용의 신용장을 적시에 매도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의 위반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적시

15) 화물을 선적함으로써 수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平野英則, “信用狀の發行遲延”, 『銀行法務21』, No.692, 2008. 9, p.69. pp.69~70.

17) 平野英則, 전제 주 16, p.73.

18)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p.113.

에'란 "어느 행위가 합의된 기일 혹은 기간 내에 행해진 때, 또는 시기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기 또는 기간 내에 행해진 때는 '적시에' 행해진 것으로 된다."라고 규정하며,²⁰⁾ "어느 행위에 관하여 무엇이 합리적 기간인가는 그 행위의 성질, 목적 및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언제 신용장이 제공된다면 합리적인가라는 문제는 지극히 곤란한 문제이며, 결국 개개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최초의 선적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수출상이 신용장을 수령한 후 국내에서 금융을 받고, 상품을 준비하는 일이 많으며, 신용장은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최초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수출상이 안심하고 수출품을 集荷·가공하고, 약속대로의 선적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는 때에 참고로 하여야 하는 기준은 최초의 선적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²²⁾

3.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실무상의 유의점

개설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의 가부를 타진받고, 또한 구체적으로 개설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무역거래에서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의무가 가지는 의미와 그 불이행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염두에 둔 뒤 여신판단과 개설사 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개설 가부의 회답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언제까지 실제로 개설하는 것이 좋은가를 수입상에게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²³⁾

금융기관이 신규 고객과의 신용장거래이기 때문에, 여신판단, 약정서의 교환 및 의뢰서 검토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또한 수입상의 신용상태에 불안이 있고 심사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수입상에게

19) UCC § 2-325(1).

20) UCC § 1-204(3).

21) UCC § 1-204(2).

22) 平野英則, 전계 주 16, p.71.

23) 平野英則, 전계 주 16, p.76.

신용장의 개설희망시기를 확인한 뒤 그 때까지 신용장을 개설가능하다는 목표가 서지 않는다면 명확히 그 취지를 수입상에게 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 때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기대하게 하는 대응은 삼갈 필요가 있다. 아무튼 고객으로부터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사람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의뢰에 대하여 단정하여 말할 때에는 신속히 또한 명확히 회답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등 다음의 수단을 취할 기회를 시간적으로 놓치고, 클레임을 제기받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늘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태만히 한다면 영업 추진면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까지 발전하는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통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xx월 xx일까지 수출상에게 통지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시에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자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명확히 대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설된 신용장이 언제 통지은행에게 도착하고, 또한 통지은행이 언제 수출상에게 통지하는가는 통신사정 및 통지사무처리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설은행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개설은행으로서는 “당행은 오늘중에 발신하지만, 언제 통지은행에게 도착하고, 언제 수익자에게 통지되는가는 통신사정 및 통지은행의 사무처리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회답하는 것이 무난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Ⅲ. 신용장의 재개설

1. 신용장 재개설의 이유

24) 平野英則, 전계 주 16, p.77.

개설은행이 신용장 재개설의 의뢰를 받는 이유는 신용장이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사이에서 분실된 경우와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접수한 후 분실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사이에서 분실된 경우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전신²⁵⁾ 또는 우편에 의하여 개설하였지만, 그것이 통지은행에게 미도착 또는不着의 경우이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UCP 600 제35조 제1 문단에 따라 메시지의 전송, 서신 또는 서류의 인도에서의 지연, 수송 중의 분실, 손상 또는 기타의 과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지는 것이 면책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설은행은 UCP 600 제7조 b항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시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서 UCP 600 제35조 제1 문단에 의한 개설은행의 면책은 동 규칙 제7조 b항에 따라 동 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시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UCP 600 제35조 제1 문단에 의한 개설은행의 면책의 대상은 메시지의 전송, 서신 또는 서류의 인도에서의 지연, 수송중의 분실, 손상 또는 기타의 과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이며, 개설은행이 동 규칙 제7조 b항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시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면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접수한 후 분실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신용장의 분실이 통지은행의 내부,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과정, 또는 수익자의 손이 미치는 범위의 어디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설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분실이며, 개설은행이 재개설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²⁶⁾

2. 신용장 재개설에 따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에서 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²⁷⁾

25) 전신의 방법에 의한 개설의 경우 SWIFT를 이용하는 경우는 불착 또는 미도착의 경우가 거의 없지만, 텔렉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SWIFT와 비교하여 불착 혹은 미도착의 경우는 着信하더라도 메시지가 손상된 경우 등이 발생하기 쉽다.

26) 平野英則, “信用狀の再發行”, 『銀行法務21』, No.704, 2009. 7, pp.59~60.

27) UCP 600 제7조 b항.

신용장의 재개설에 의하여 당초 개설한 신용장(원신용장)에 기초하는 정지조건부 채무를 이증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재개설에 따라 수출지 측에서 원신용장 및 재개설신용장이 이증으로 사용될 위험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자(수출상)가 원신용장 및 재개설 신용장에 기초하여 이증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제3자가 수익자의 이름을 사칭하여 위조서류를 작성하고, 원신용장 또는 재개설 신용장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은 낮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개설은행은 이들 위험도 감안하여 재개설의 가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⁸⁾

3. 신용장 재개설과 관련된 개설은행의 실무상의 유의점

신용장이 재개설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장의 이증 사용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통지은행에게로 미도착 또는 불착의 경우이더라도 재개설의 의뢰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들의 위험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재개설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먼저 신용장이 개설은행과 통지은행과의 사이에서 분실된 경우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으로부터 전신에 의하여 개설한 신용장을 접수하고 있지 않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던 경우는 2중 통지의 회피를 의뢰하는 “Avoiding Duplication” 등의 문언을 붙여서, 신용장의 재개설을 행한다. 또한 우송에 의한 경우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증장 또는 각서를 징구하여 재개설에 응하여야 한다.

전신과 우송으로 대응이 다른 것은 먼저 전신에 의한 경우는 개설은행이 2중 통지의 회피를 의뢰하는 “Avoiding Duplication” 등의 문언을 붙여서 재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이 2중 통지를 한 경우는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하여 2중 통지의 책임을 추궁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송에 의한 경우는 분실한 신용장이 통지은행을 경유하는 것 없이 수익자 또는 제3자의 손에 인도될 위험성이 있으며,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2중 개설에 의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의 보증장과 각서에 의하여 이 위험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28) 平野英則, 전계 주 26, p.58.

다.

다음으로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접수한 후 분실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분실이며, 재개설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접수하고 있는 경우는 개설의뢰인을 경유하여 수익자로부터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통지서의 재개설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²⁹⁾

신용장이 재개설되는 경우 개설은행으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선 신용장의 취소를 행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취득하고, 취소의 효과가 확정된 시점에서³⁰⁾ 재개설의 의뢰에 응하는 것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되기 전이더라도 수익자의 승낙이 있다면 신용장의 취소를 성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용장의 재개설을 의뢰하는 것은 개설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용장을 빨리 입수하고 싶은 수익자의 요청에 기초하는 것이 통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경우 수익자의 승낙을 성립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재개설의뢰에 안이하게 응하는 것 없이 신중히 의뢰의 배경을 조사하고, 자행도 납득한 뒤 재개설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전도 검토하면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³¹⁾

IV.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

1.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의의 및 거래과정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이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이 서로 다른 신용장을 말한다. 즉,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이 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설은행이

29) 平野英則, 전계 주 26, pp.59~60.

30) UCP 600 제10조 a항 참조.

31) 平野英則, 전계 주 26, p.60.

외국환거래약정서를 교환하고 있는 거래처 A사의 의뢰에 따라 제3자인 B사를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³²⁾가 이것에 해당한다.³³⁾

제3자 명의의 신용장거래는 아래와 같이 행해진다.

- ① 수입상(B사)과 수출상(S사)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 ② 수입상(B사)은 자기의 명의를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개설의뢰인(A사)이 자기의 거래은행(I은행)에게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는 것을 위임한다.
- ③ 개설의뢰인(A사)은 자기의 명의로 개설은행(I은행)에게 수입상(B사)을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 ④ 개설은행(I은행)은 의뢰받은 신용장을 개설한다.
- ⑤ 수출지의 통지은행은 개설된 신용장을 수출상(S사)에게 통지한다.
- ⑥ 수출상(S사)은 통지된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선적을 행하고, 환어음 및/또는 선적서류를 모두 갖추고 자기의 거래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한다.
- ⑦ 수출상(S사)의 거래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심사한 뒤 매입한다.
- ⑧ 수출상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은 매입한 서류를 개설은행(I은행)에게 송부하고, 보상을 청구한다.
- ⑨ 개설은행(I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심사하고, 매입은행에게 보상채무를 이행한다.³⁴⁾
- ⑩ 개설은행(I은행)은 보상채무를 이행한 것에 기초하여 개설의뢰인(A사)에 대하여 상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 ⑪ 개설의뢰인(A사)은 개설은행(I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이행한다.
- ⑫ 개설은행(I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이행한 개설의뢰인(A사)은 수입상(B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기초하는 사무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

32) 우리나라 한국외환은행의 (표준) 외국환거래약정서 제3장 제18조 제3자 명의의 신용장 발행에서 “본인이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을 은행에 본인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EP-F-FM-069(2005. 5월 개정)(<http://www.keb.co.kr>))

33) 平野英則, “第三者名義の信用狀の發行(その1)”, 『銀行法務21』, No.698, 2009. 2, p.67.

34) UCP 600 제7조 c항 1문.

⑬ 수입상(B사)은 개설의뢰인(A사)에 대하여 청구된 상환채무를 이행한다.³⁵⁾

2.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거래배경

제3자 명의의 신용장거래가 행해지는 배경에는 개설의뢰인이 자기의 명의를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서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익명형’, 개설의뢰인이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이 가지는 권익을 이용하는 ‘권익이용형’, 개설의뢰인이 수입실무에 서툰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육성형’,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권회수의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채권회수형’ 및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의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받는 ‘신용도 부족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익명형’은 개설의뢰인(A사)이 자기의 명의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서 제3자(B사)를 이용하고, 자기의 거래은행(I은행)에게 제3자(B사)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는 것이다.

‘권익이용형’은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B사)이 수출상(S사)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 따라 가격면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권익을 가지는 경우에 개설의뢰인(A사)이 제3자(B사)의 권익(유리한 지위)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거래은행(I은행)에게 제3자(B사)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는 것이다.

‘육성형’은 친회사인 A사가 수입부문을 분사화하고, 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지만, B사가 설립 후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실무에 서툴며, 또한 B사만의 신용도로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개설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A사가 B사를 육성하는 목적에서 자기의 거래은행(I은행)에게 제3자(B사)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는 것이다.

‘채권회수형’은 제3자(B사)가 수입품을 개설의뢰인(A사)에게 납품하고 있으

35) 平野英則, 전계 주 33, pp.68~69.

며, 그 대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자기(B사)를 신용장면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A사가 거래은행(I은행)에게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도록 A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신용도 부족형’은 제3자(B사)가 신용도 부족 때문에 자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하여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의뢰인(A사)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받기 위하여 자기(B사)를 신용장면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A사가 거래은행(I은행)에게 자기의 명의로 의뢰하도록 A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³⁶⁾

3.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개설은행의 실무상의 유의점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개설은행은 상환청구 및 여신의 상대방을 개설의뢰인(A사)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B사)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개설은행(I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보상채무를 이행한 경우,³⁷⁾ 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대방이 개설의뢰인(A사)인가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B사)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외환은행(표준)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8조는 “본인이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을 은행에 본인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적용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인 A사가 I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며, I은행이 동 약정서에 기초하는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대방은 A사라는 것으로 된다. 게다가 개설은행(I은행)은 거래처인 개설의뢰인(A사)과는 신용장개설계약(위임계약)의 관계에 서환을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B사)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A사의 I은행에 대한 신용장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구하는 연대채무(I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가 I은행은 B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는 것이

36) 平野英則, 전계 주 33, pp.69~71.

37) 여기에서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보상확약은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확약과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J. Barnes, “Reimbursement rights under deferred payment credits”, *DCInsight*, Vol.16, No.1, 2010. 1/3, p.18.).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개설은행의 여신의 상대방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위의 조항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이 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 여부의 여신판단을 하는 경우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개설의뢰인의 신용력이며, 그 신용력을 기초로 여신판단을 하는 이상 상환청구의 상대방도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의하여 여신판단의 상대방과 상환청구의 상대방을 일치시킨다.

실무상 제3자 명의의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은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인 제3자와는 거래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제3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여신판단을 하는 것이 실제상 불가능하다는 거래실태에도 일치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은 자행과 개설의뢰인과의 여신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³⁸⁾

다음으로 개설은행은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특히 위임관계의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은행은 거래처인 개설의뢰인 자신이 신용장면상도 개설의뢰인이 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통상과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개설은행(I은행)은 위임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B사)가 거래처(A사)에 대하여 제3자(B사)를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거래은행(I은행)에게 의뢰하는 것을 위탁하는 취지의 위임장³⁹⁾을 신용장의 개설의뢰서와 함께 징구하는 실무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B사)가 자행의 거래처인 경우는 자행이 위임장의 서명·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행의 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자행에서 인감대조하여 확인을 하고, 또는 제3자(B사)의 거래은행에 의한 서명·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⁴⁰⁾

마지막으로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실무상의 유의점으로는

38) 平野英則, 전계 주 33, pp.72~73.

39) 위임장에는 신용장면상의 개설의뢰인이 되는 제3자(B사)가 개설의뢰인(A사)에 대하여 신용장의 개설의뢰를 위탁하는 취지, 수입환의 결제 및 이것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취지 및 신용장의 명세로서 수익자명, 금액, 유효기한, 선적기한, 수입품명 등이 기재되고 있다.

40) 平野英則, “第三者名義の信用狀の發行(その2)”, 『銀行法務21』, No.701, 2009. 4, p.72.

첫째,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래의 배경을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둘째, 상환청구의 상대방인 개설의뢰인의 여신판단을 언제나 신중히 행하여야 하는 것, 셋째, 신용장 금액이 지나치게 거액이 되거나, 과대여신이 되지 않는 가, 여신보전책이 충분한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¹⁾

V. 결 론

본고는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제 문제로서 신용장의 개설, 신용장의 재개설,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수입상의 신용장 제공이 수출상의 화물 선적의무의 정지조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수입상이 제공한 신용장을 수출상이 입수하기 전에는 수출상은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상이 수출상에 대하여 신용장을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는 약정된 기일이 있다면 당연히 약정된 기일까지 제공하여야 하지만, 약정된 기일이 없다면 최초의 선적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기대하게 하는 대응은 삼갈 필요가 있으며, 만일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입상이 다른 금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명확히 거절의 답변을 제공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장의 재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재개설에 따라 수출지 측에서 원신용장 및 재개설신용장이 2중으로 사용될 위험을 부담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들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신에 의한 경우에는 2중 통지의 회피를 의뢰하는 “Avoiding Duplication” 등의 문언을 붙여서 신용장의 재개설을 행하고,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증장 또는 각서를 징구하여 재개설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장이 재개설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우선 신용장의 취소를 행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취득하고 취소의 효과가 확정된 시점에서 재개설의 의뢰에 응하는 것이

41) 平野英則, 전제 주 33, p.74.

가장 안전한 방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제3자 명의의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상환청구 및 여신의 상대방은 모두 개설의뢰인이며,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서와 함께 위임장을 함께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래의 배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상환청구의 상대방인 개설의뢰인의 여신평단을 언제나 신중히 행하고, 여신보전책이 충분한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 平野英則, “信用狀の再發行”, 『銀行法務21』, No.704, 2009. 7.
- _____, “信用狀の發行遲延”, 『銀行法務21』, No.692, 2008. 9.
- _____, “UCP600第10條f項新設の背景および實務上の留意点”, 『金融法務事情』, No.1831, 2008. 4.
- _____, “第三者名義の信用狀の發行(その1)”, 『銀行法務21』, No.698, 2009. 2.
- _____, “第三者名義の信用狀の發行(その2)”, 『銀行法務21』, No.701, 2009. 4.
- Baker, W. & Dolan, J. F.,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694, 2008.
- Barnes, J., “Reimbursement rights under deferred payment credits”, *DCInsight*, Vol.16, No.1, ICC, 2010. 1/3.
- Dolan, J. F., “The strict compliance rule in a recession”, *DCInsight*, Vol.15, No.4, ICC, 2009. 10/12.
- Ford, M., “A new order in the L/C market?”, *DCInsight*, Vol.16, No.1, ICC, 2010. 1/3.
- George, N.D., “The irrevocable credit and UCP 600 article 32”, *DCInsight*, Vol.13, No.1, ICC, 2007. 1/3.
- Hoque, A.T.M. N., “The irrevocable credit and the presenter's rights”, *DC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ICC, "New directions for the ICC Banking Commission", *DCInsight*, Vol.15, No.3, ICC, 2009. 7/9.

Song, C.S. T.,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15, No.3, ICC, 2009. 7/9.

ABSTRACT

A Study on the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Lee, Bang Sik · Park, Suk Jae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Those problems are the delay of issuing letters of credit, the reissuing letters of credit, and the issuing letters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Sellers and buyers must keep in mind that the supply of letter of credit by buyer is the condition precedent for a seller's shipment obligation. A seller has no obligation to ship the goods until he receives the letter of credit by buyer's bank, issuing bank.

An issuing bank can have the risk that an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a reissued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dou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he most safe method for issuing bank is to cancel the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to reissue a new letter of credit.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letter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the bank should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 and give the buyer a proper line of credit.

Key Words : UCP 600, Letter of Credit, Issuance of L/C